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1992년 11월 7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통과

1992년 11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4호 공포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선박

제1절 선박소유권

제2절 선박저당권

제3절 선박우선권

제3장 선원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선장

제4장 해상화물운수계약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운송인의 책임

제3절 탁송인의 책임

제4절 운수증빙

제5절 화물인도

제6절 계약의 해제

제7절 항해용선계약의 특별규정

제8절 복합운송계약의 특별규정

제5장 해상여객운수계약

제6장 선박임차계약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정기선박임차계약

제3절 선박만을 임차하는 계약

제7장 해상예선계약

제8장 선박충돌

제9장 해난구조

제10장 공동해손

제11장 해상사고 배상책임제한

제12장 해상보험계약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계약의 성립·해제·양도

제3절 피보험인의 의무

제4절 보험인의 책임

제5절 보험목적의 손실과 위부

제6절 보험배상의 지급

제13장 시효

제14장 해외관계의 법률적용

제15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해상운수관계·선박관계를 조정하고 당사자 각 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해상운수와 경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해상운수란, 해상화물운수와 해상여객운수를 말하며 바다와 강 사이, 강과 바다 사이의 직항운수를 포함한다.

이 법 제4장의 해상화물운수계약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간의 해상화물운수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법에서의 선박이란 해선과 기타 해상 이동식 장치를 말하나 단, 군사·정부공무에 사용되는 선박과 20톤 이하의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선박은 선박에 소속된 기구를 포함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간의 예선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이 경영한다. 단,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무원 교통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 국적의 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간의 해상운수와 예선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법에 의거하여 등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할 권리가 있다.

불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한 선박은 유관기관이 제지하며 벌금에 처한다.

제6조 해상운수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친 후 시행한다.

제2장 선박

제1절 선박소유권

제7조 선박소유권이란 선박소유인이 법에 의거하여 당해 선박에 대하여 점유·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국가소유의 선박은 국가가 법인자격을 구비한 전민소유제 기업이 경영관리하도록 수권한 경우, 이 법의 선박소유인과 관련된 규정은 동 법인에 적용한다.

제9조 선박소유권의 취득·양도·소멸은 마땅히 선박등기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삼자에게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소유권의 양도는 마땅히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선박을 두 명 이사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유한 경우, 마땅히 선박등기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삼자에게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선박저당권

제11조 선박저당권이란 저당권자가 저당인이 제공한 채무담보의 선박에 대하여 저당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법에 의거하여 경매를 실시하고 획득한 대금 중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12조 선박소유인 또는 선박소유인이 수권한 자는 선박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선박저당권의 설정은 마땅히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선박저당권이 설정은 저당권자와 저당인이 공동으로 선박등기기관에 저당권등기를 수속하여야 한다.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삼자에게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저당권 등기는 다음의 주요 항목을 포함한다.

(一)선박저당권자와 저당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二)피저당 선박의 명칭·국적·선박소유권증서의 발급기관과 증서번호

(三)담보한 채권액수・이자율・상환 기한

선박저당권의 등기상황은 대중의 열람을 허용한다.

제14조 건조 중의 선박은 선박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건조 중의 선박의 저당권등기의 수속은 마땅히 선박등기기관에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당인은 마땅히 피저당선박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권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료는 저당인이 부담한다.

제16조 선박공유인이 공유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삼분의 이 이상 몫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인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하며, 공유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선박공유인이 설정한 저당권은 선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선박저당권의 설정 후 저당권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저당인은 피저당선박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저당권자가 피저당선박으로 담보한 채권의 전부 또는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저당권은 그에 따라 이전된다.

제19조 동일 선박은 두 개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선박이 두 개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 등기의 선후순서에 따라 선박경매소득 대금 중 순서대로 변제받는다. 동일한 날짜에 등기한 저당권은 동일 순서에 따라 변제받는다.

제20조 피저당선박이 멸실되면, 저당권은 그에 따라 소멸된다. 선박의 멸실로 인하여 얻은 보험배상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기타 채권인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3절 선박우선권

제21조 선박우선권이란 해상청구인이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박소유인·선박임대인·선박경영인에게 해사청구를 제기하고 동 해사청구를 발생시킨 선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22조 다음의 각종 해사청구는 선박우선권을 구비한다.

(一)선장·선원과 선박 상에서 작업하는 기타 재적인원의 노동법률·행정법규 또는 노동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임금·기타 노동보수·선원송환비용과 사회보험비용의 급부청구

(二)선박운영 중 발생하는 인신 사상의 배상청구

(三)선박항만시설사용료, 도선세, 입항세와 기타 항구 규정수수료의 지급 청구

(四)해난구조의 구조대금의 지급 청구

(五)선박의 운영 중 침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배상청구

2000톤 이상의 비포장화물유를 적재한 선박이 유효한 증서를 소지하고 있고 이미 기름오염손해의 민사책임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상응하는 재무보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그 조성한 기름오염손해의 배상청구는 전항 제(五)항 규정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 법 제22조 제1항에서 나열한 각종 해사청구는 순서에 따라 변제된다. 단, 제(四)항의 해사청구는 제(一)항에서 제(三)항보다 나중에 발생한 경우, 마땅히 제(一)항에서 제(三)항보다 우선 변제된다.

이 법 제22조 제1항 제(一)·(二)·(三)·(五)항 중 두 개 이상의 해사청구가 있는 경우, 선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변제된다. 변제에 부족한 경우, 비율에 따라 변제된다. 제(四)항 중 두 개 이상의 해사청구가 있는 경우, 나중에 발생한 것이 우선 변제된다.

제24조 선박우선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선박의 보존·경매와 선박대금의 분배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및 해사청구인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타 비용은 마땅히 선박경매소득대금 중 우선 할당하여야 한다.

제25조 선박우선권은 선박유치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며 선박저당권은 선박유치권보다 나중에 변제된다.

전항에서 말하는 선박유치권이란, 선박건조인·선박수리인이 계약의 타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 점유하고 있는 선박을 유치할 수 있으며, 선박건조비용 또는 선박수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권리를 말한다. 선박유치권은 선박건조인·선박수리인이 더 이상 건조 또는 수리한 선박을 점유하지 아니할 시 소멸된다.

제26조 선박우선권은 선박소유권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단, 선박양도 시, 선박우선권은 법원이 수양인의 신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이 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해사청구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선박우선권은 그에 따라 이전된다.

제28조 선박우선권은 마땅히 법원의 차압을 통하여 우선권이 발생하는 선박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9조 선박우선권은 이 법 제2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원인 중의 하나로 인하여 소멸한다.

(一)선박우선권을 구비한 해사청구를 우선권 발생일로부터 시작하여 만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二)선박이 법원에 의하여 강제 매각된 경우

(三)선박이 멸실된 경우

전항의 제(一)항의 1년의 기한은 중지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이 절의 규정은 이 법 제11장의 해사배상책임제한규정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선원

제1절 일반규정

제31조 선원이란 선장을 포함한 선상의 모든 임직인원을 말한다.

제32조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전기기계인원·통신원은 반드시 상응하는 임직증서를 소지한 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제33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중국국적선원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항무감독기구가 발급한 해원증과 관련 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선원의 임용과 노동 분야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선장

제35조 선장은 선박의 관리와 항해를 담당한다.

선장이 그 직권범위 내에서 발포하는 명령에 대하여 선원·여객과 기타 선상인원은 모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선장은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선박과 선상인원·문건·우편물·화물 및 기타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6조 선상인원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장은 선상에서 불법·범죄활동을 진행하는 자에 대하여 감금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증거를 은닉·훼멸·위조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가 있다.

선장이 전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마땅히 안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장과 두 명 이상의 선상인원이 서명하고 범인과 함께 관련 당

국에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선장은 마땅히 선상에서 발생하는 출생 또는 사망사건을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두 명의 증인의 입회 하에서 증명서를 제작하여야 한다. 사망증명서는 마땅히 사망자의 유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망자가 유언이 있는 경우, 선장은 마땅히 증명하여야 한다. 사망증명서와 유언은 선장이 보관을 책임지며 가족 또는 관련측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선박이 해상사고가 발생하여 선상인원과 재산의 안전이 위급할 시 선장은 마땅히 선원과 기타 선상인원을 조직하여 최선을 다하여 구조하여야 한다. 선박의 침몰·훼멸을 피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선장은 선박포기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단,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마땅히 선박소유인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선박 포기 시, 선장은 반드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우선적으로 여객을 안전하게 배로부터 이탈시키고 난 후 선원을 이탈시키며 선장은 마땅히 최후에 배를 이탈하여야 한다. 선박 포기 전에 선장은 마땅히 선원을 지휘하여 최선을 다하여 항해일지·선창일지·기름유기록장부·무선전신일지 및 동 항해에서 사용했던 항해용 지도와 문건, 귀중품·우편물·현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9조 선장의 선박관리와 선박운항의 책임은 도선원의 선박도선으로 인하여 해제되지 아니한다.

제40조 선장이 항행 중 사망하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시,

마땅히 항해사 중 직무가 가장 높은 자로 하여금 선장직무를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 항구에서 출항하기 이전에 선박소유인은 마땅히 신임선장을 파견하여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해상화물운수계약

제1절 일반규정

제41조 해상화물운수계약이란, 운송인이 운수비비를 수취하고 탁송인이 탁송한 화물을 해로를 거쳐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의 운반을 책임지는 계약을 말한다.

제42조 이 장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一)"운송인"이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본인의 명의로 탁송인과 해상화물운수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二)"실제운송인"이란, 운송인의 위탁을 수용하여 화물운수 또는 부분운수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재위탁을 수용하여 이러한 운수에 종사하는 기타인을 포함한다.

(三)"탁송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1.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본인의 명의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본인을 위하여 운송인과 해상화물운수계약을 체결하도록 위탁하는 자

2.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본인의 명의로 또는 타인에게 위

탁하여 본인을 위하여 화물을 해상화물운수계약과 관련하여

(四)"수하인"이란, 화물을 인출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五)"화물"은 활동물과 탁송인이 제공하여 컨테이너화물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받침대 또는 유사한 운반기구를 포함한다.

제43조 운송인 또는 탁송인은 서면으로 해상화물운송계약의 성립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항로용선계약은 마땅히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전보·전송·팩스는 서면효력을 갖는다.

제44조 해상화물운수계약과 계약증빙서류로 간주되는 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수증빙 중의 조항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무효하다. 이러한 종류의 조항의 무효함은 동 계약과 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수증빙 중의 기타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화물의 보험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조항 또는 유사 조항은 무효하다.

제45조 이 법 제44조의 규정은 운송인의 이 장 규정의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증가한다.

제2절 운송인의 책임

제46조 운송인의 컨테이너 운반화물에 대한 책임기간이란, 선적항에서 화물을 접수하는 시점부터 하역항에서 화물 교부 시점까지, 화물이 운송인의 관할 하에 처해 있는 전체 기간을 말한다. 운송인의 비컨테이너 선적화물에 대한 책임기간이란, 화물을 배에 선적한 시점부터 하역

시점까지 화물이 운송인의 관할 하에 있는 전체 기간을 말한다. 운송인의 책임기간에 화물에 멸실 또는 손괴가 발생하면, 이 절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은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의 비컨테이너 선적화물의 선적 전과 하역 후에 부담해야하는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협의를 체결하는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7조 운송인은 선박의 출항 전과 출항 당시 마땅히 신중하게 처리하여 선박이 적당한 출항 상태가 되도록 선원·장비선박을 배치하고 공급품을 구비하고 화물창·냉장창·냉기창과 기타 화물선적처를 화물의 수수·적재·보관에 적합하고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 운송인은 마땅히 운반하는 화물을 적절하고 신중하게 선적·운반·적재·운수·보관·관리·하역하여야 한다.

제49조 운송인은 마땅히 약정된 또는 관습적 또는 지리 상의 항선에 따라 화물을 하역항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선박이 해상의 구조활동 또는 인명 또는 재산의 구조 기도로 인하여 돌아가거가 기타 합리적인 우회항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50조 화물이 명확히 약정된 시간 내에, 약정된 하역항에서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를 교부연기라고 한다.

이 장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정황 이외에, 운송인의 과실이 화물의 교부연기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괴를 초래한 경우, 운송인은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정황 이외에, 운송인의 과실로 화물의 교부연기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설령 화물이 멸실되거나 손괴되지 아니하여도 운송인은 여전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간이 만 60일 이내에 화물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화물의 멸실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자는 화물이 이미 멸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51조 책임기간에 화물에 발생한 멸실 또는 손괴가 다음의 원인 중 하나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一)선장·선원·도선원 또는 운송인의 기타 고용인이 선박운항 또는 선박관리 중 발생한 과실

(二)화재, 단, 운송인 본인의 과실로 초래된 경우는 제외

(三)천재, 해상 또는 기타 항해 가능 수역의 위험 또는 의외의 사고

(四)전쟁 또는 무장충돌

(五)정부 또는 각 주관부서의 행위·검역제한 또는 사법차압

(六)파업·휴업 또는 노동 제한

(七)해상 구조활동 또는 인명 또는 재산의 구조 기도활동

(八)탁송인·화물소유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의 행위

(九)화물의 자연적 특정 또는 고유의 결함

(十)화물포장의 불량 또는 표지의 결함, 부정확함

(十一)신중한 처리를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발견할 수 없는 선박의 잠재적 결함

(十二)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의 과실로 초래된 것이 아닌 기타의 원인

운송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이 면제된 경우, 제(二)항에서 규정하는 원인을 제외하고 마땅히 증거제출의 책임이 있다.

제52조 운수활동물의 고유한 특수 위험으로 인하여 활동물의 멸실 또는 손해된 경우,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운송인은 마땅히 탁송인이 운수활동물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이미 이행하였음을 증명하고, 아울러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멸실 또는 손해가 이러한 고유한 특수 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 운송인이 갑판 상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마땅히 탁송인과 협의에 도달하거나 운항관례에 부합하거나 또는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을 갑판 상에 선적함에 있어 이러한 선적의 특수 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된 화물의 멸실 또는 손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운송인이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화물을 갑판 상에 선적하여 화물의 멸실 또는 손괴를 초래한 경우,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4조 화물의 멸실·손괴 또는 교부연기가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의 그 배상책임의 부담을 면제할 수 없는 원인과 기타 원인 공동으로 조성된 경우, 운송인은 단지 그 배상책임의 부담을 면제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단, 운송인이 기타 원인으로 야기된 멸실·손괴 또는 교부 연기에 대하여 마땅히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제55조 화물 멸실의 배상액은 화물의 실제 가치로 계산한다. 화물 손해의 배상액은 화물이 손해되기 전후의 실제 차액 또는 화물의 회복비용에 따라 계산한다.

화물의 실제가치는 화물 선적 시의 가치에 보험료와 운수비비를 더하여 계산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화물의 실제가치는 배상 시 마땅히 화물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이 면제된 관련 비용을 감하여야 한다.

제56조 운송인의 화물의 멸실 또는 손괴에 대한 배상한도액은 화물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운송단위수로 계산하며 매 건당 또는 매 기타 화물의 단위는 666.67계산단위이거나, 화물의 순중량으로 계산하며, 1kg은

2계산단위이고, 이 두 가지 경우 중 배상한도액이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단, 탁송인이 화물의 운송 전이 이미 그 성질과 가격을 신고하고 아울러 선하증권 중 명기한 경우, 또는 운송인과 탁송인이 이미 별도로 이 조의 규정보다 높은 배상한도액을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화물용컨테이너·받침대 또는 유사한 운반기구로 포장한 경우, 선하증권 중 이러한 종류의 운반기구 중에 포장된 화물건수 또는 기타 화물운수단위수를 명기한 경우, 전항에서 말하는 화물건수 또는 기타 화물운수단위수로 간주한다.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하나의 운수기구는 1건 또는 1개의 단위로 간주한다.

운수기구가 운송인의 소유가 아니거나 또는 운송인이 제공한 것이 아닌 경우, 운수기구 자체는 마땅히 1건 또는 1개의 단위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57조 운송인의 화물의 교부 연기로 초래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한도액은 교부연기된 화물의 운수비비 액수이다. 화물의 멸실 또는 손괴와 교부 연기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배상한도액은 이 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58조 해상화물운수계약이 관련되는 화물멸실·손괴 또는 교부연기로 인하여 운송인에게 제기하는 모든 소송에 대하여, 해사청구인이 계약의 일방인지를 논하지 아니하며, 또한 계약에 근거한 거인지 또는 침권

행위에 근거하여 제기한 것인지 논하지 아니하고 모두 이 장의 운송인의 항변사유와 배상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항의 소송이 운송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제기한 경우, 운송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증명을 거쳐 그 행위가 고용 또는 위탁을 받은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9조 증명을 거쳐 화물의 멸실·손괴 또는 교부 연기가 운송인의 고의 또는 손실을 초래할 것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경솔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초래된 경우, 운송인은 이 법 제56조 또는 제57조가 규정하는 배상책임제한의 규정을 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명을 통하여 화물의 멸실·손괴 또는 교부연기가 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이 고의 또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경솔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 운송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은 이 법 제56조 또는 제57조의 배상책임제한의 규정을 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운송인이 화물운수 또는 부분운수를 실제운송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게 한 경우, 운송인은 여전히 마땅히 이 장 규정에 의거하여 전체 운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실제운송인이 이행한 운수에 대하여, 운송인은 마땅히 실제운송인의 행위 또는 실제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이 고용 또는 위탁한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비록 전항의 규정이 있을지라도, 해상운수계약 중 명확하게 계약이 포함하는 특정한 부분운수가 운송인 이외의 지정된 실제운송인이 이행하도록 명기되어있는 경우, 계약은 동시에 약정할 수 잇으며 화물이 지정된 실제운송인이 관할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멸실·손괴 또는 교부연기에 대하여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실제운송인에게 적용한다. 실제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제58조 제2항과 제5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2조 운송인은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무의 부담 또는 이 장이 부여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어떠한 특별 협의도 실제운송인의 서면으로 명확히 동의한 경우, 실제운송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실제운송인의 동의여부는 이 특별협의의 운송인에 대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63조 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이 모두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마땅히 책임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4조 화물의 멸실 또는 손괴에 대하여 운송인·실제운송인 및 그들의 고용인·대리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배상청구를 제기한 경우, 배상총액은 이 법 제56조 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이 법 제60조에서 제64조까지의 규정은 운송인과 실제운송인 간의 상호 구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3절 탁송인의 책임

제66조 탁송인의 화물 탁송은 마땅히 적절하게 포장하고 운송인에게 화물의 선적 시에 제공하는 화물의 명칭·표지·포장수 또는 건수·중량 또는 체적의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포장불량 또는 상술한 자료가 부정확하여 운송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탁송인은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변제권리는 그 화물운수계약이 탁송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조 탁송인은 마땅히 적시에 항구·세관·검역·검사와 기타 주관부서에 화물운수에 필요한 각종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미 수속을 완료한 증빙을 운송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각종 수속을 처리한 관련 증빙이 적시에 송부되지 아니하거나, 완전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하여 운송인의 이익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탁송인은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8조 탁송인이 위험화물을 탁송하는 경우, 마땅히 해상위험화물운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포장하고 위험품표지와 라벨을 부착하며 그 정식명칭과 성질 및 마땅히 취하여야 하는 위험예방조치를 서면으로 운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탁송인이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에 오류가 있는 경우, 운송인은 어떠한 시간·장소에서도 정황의 필요에 근거하여 화물을 하역·훼멸하거나 위해를 제거할 수 있으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탁송인은 운송인이 이러한 화물의 운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위험화물의 성질을 알고 이미 선적에 동의한 경우에도 여전히 동 화물이 선박·인원 또는 기타 화물에 실제적인 위험을 조성할 수 있을 시, 화물을 하역·훼멸하거나 위해를 제거할 수 있으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이 항의 규정은 공동해상손해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9조 탁송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운송인에게 운수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탁송인과 운송인은 운수비비를 수하인이 지급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약정은 마땅히 운수증빙 상에 명기되어야 한다.

제70조 탁송인은 운송인·실제운송인이 입은 손실 또는 선박이 입은 손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손실 또는 손괴가 탁송인 또는 탁송인의 고용인·대리인의 과실로 조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탁송인의 고용인·대리인은 운송인·실제운송인이 입은 손실 또는 선박이 입은 손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손실 또는 손괴가 탁송인의 고용인·대리인의 과실로 인하여 조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절 운수증빙

제71조 선하증권이란, 해상화물운수계약과 화물이 이미 운송인에 의하여 접수되었거나 선적되었음 및 증명하거나 운송인이 화물을 교부한 근거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선하증권 중에 명기하고 기명인이 화물을 교부하거나 지시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교부하거나 선하증권 소유인에게 화물을 교부하였다는 조항은 운송인이 화물을 교부한 근거의 증명을 구성한다.

제72조 화물은 운송인이 접수하거나 선적한 후 마땅히 탁송인의 요구에 따라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서명하여야 한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수권한 자가 서명할 수 있다. 선하증권이 화물을 선적한 선박의 선장이 서명한 경우, 운송인을 대표하여 서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3조 선하증권의 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一)화물의 품명·표지·포장수 또는 건수·중량 또는 체적 및 위험화물의 운수 시 위험성질에 대한 설명

(二)운송인의 명칭과 주요 영업장소

(三)선박명칭

(四)탁송인의 명칭

(五)수하인의 명칭

(六)선적항과 선적항에서 화물을 접수한 일시

(七)하역항

(八)복합연합운수 선하증권에는 화물을 접수한 지점과 화물을 교부한 지점을 첨가하여 열거

(九)선하증권의 서명일시·지점·수량

(十)운수비용의 지급

(十一)운송인 또는 그를 대표하는 서명

선하증권에 전항 규정의 항목 중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이 결핍된 경우, 선하증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선하증권은 마땅히 이 법 제71조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4조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운송인이 이미 탁송인의 요구에 따라 화물수취대기선하증권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운송인에게 반환하고 화물선적선하증권을 교환할 수 있다. 운송인 또한 화물수취 대기선하증권 상에 운송선박의 선박명칭과 선적일시를 명기하고, 이를 명기한 화물수취대기선하증권은 선적증빙서류로 간주한다.

제75조 운송인 또는 그를 대리하여 증빙에 서명한 자가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품명·표지·포장수·건수·중량·체적과 실제 접수한 화물이 부합하지 아니함을 알거나 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이를 의심하거나, 선적선하증권에 이미 서명한 상황 하에서 이미 선적한 화물과 부

합하지 아니함을 의심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선하증권에 기재된 것을 대조할 수 없는 경우, 선하증권 상에 주석을 달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 의심되는 근거를 설명하거나 대조할 방법이 없음을 설명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76조 운송인 또는 그를 대리하여 선하증권에 서명한 자가 선하증권 상에 화물의 표면적 상황에 대하여 주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화물의 표면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7조 이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류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 또는 그를 대리하여 선하증권에 서명한 자가 서명한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이미 선하증권에 기재된 상황에 따라 화물을 접수하거나 화물이 이미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초보적인 증거로 간주한다. 운송인은 수하인을 포함하는 선하증권을 인수하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제출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상황과 다른 증거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8조 운송인의 수하인·선하증권소유인 간의 권리·의무관계는 선하증권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수하인·선하증권소유인은 하역항에서 발생하는 체선료·공하운수비와 기타 화물선적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단, 선하증권 상에 상술한 비용은 수하인·선하증권소유인이 부담하도록 명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9조 선하증권의 양도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一)기명선하증권: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二)지시선하증권:기명배서 또는 백지배서하여 양도한다.

(三)무기명 선하증권: 배서할 필요가 없으며 즉시 양도가능하다.

제80조 운송인이 서명한 선하증권 이외의 증빙서류로 화물수취대기를 증명하는 경우, 이 항목의 증빙은 적재·운송을 요하는 화물을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며 이러한 증빙은 해상·화물·운수계약의 체결과 운송인이 그 증명서 중 열거된 화물을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초보적 증명서로 간주한다. 운송인이 서명한 이러한 종류의 증빙은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절 화물인도

제81조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시, 수하인은 화물이 멸실 또는 손괴 상황을 서면으로 운송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항의 인도는 운송인이 이미 운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의거하여 인도하였거나 화물 상태가 양호하였음을 증명하는 초보적 증거로 간주한다.

화물의 멸실 또는 손괴의 상황이 경미한 경우, 화물을 교부한 익일부터 7일 이내에, 컨테이너 화물을 인도한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수하인이 서면통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화물 교부시, 수하인이 이미 운송인을 만나 화물에 대하여 함께 검사를 진행하였거나 검정한 경우, 조사된 멸실 또는 손괴의 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제82조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날의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수하인이 화물이 교부 연기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조성하였다는 서면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3조 수하인은 목적항에서 화물을 인수하기 전에 운송인이 목적항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전에 검사기관에 대하여 화물상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를 요구한 일방은 검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화물 손실을 조성한 책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84조 운송인과 수하인은 이 법 제81조와 제83조 규정의 검사에 대하여 반드시 합리적인 편리조건을 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5조 화물을 실제운송인이 교부한 경우, 수하인이 이 법 제81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제운송인에게 인도한 서면통지는 운송인에게 서면통지를 송부한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운송인에게 교부한 서면통지는 실제운송인에게 서면통지를 교부한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86조 하역항에 화물인수인이 없거나 수하인이 화물수취를 연기·거절한 경우, 선장은 화물을 창고나 기타 적합한 장소에 하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과 위험은 수하인이 부담한다.

제87조 운송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공동 해상손실부담, 체선료와 운송

인이 화물을 위해 미리 지급한 필요비용 및 운송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타 비용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또한 적당한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인은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당해 화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제88조 운송인이 이 법 제87조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한 화물은 선박이 하역항에 도착한 익일부터 60일이 될 때까지 어떠한 자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은 법원에 결정을 신청하여 경매할 수 있다. 화물이 쉽게 변질되거나 화물의 보관 비용이 그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소득 금액은 보관, 화물경매 비용과 운수비 및 운송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타 관련 비용의 배상에 사용한다.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운송인은 운송위탁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잔여액은 운송위탁인에게 반환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경매한 날로부터 만1년 동안 어떠한 자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고에 귀속한다.

제6절 계약의 해제

제89조 선박이 화물선적항에서 출항하기 이전에 운송위탁인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계약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위탁인은 반드시 운송인에게 예정된 운반비용의 절반을 지급하여야 한다. 화물을 이미 배에 선적한 경우, 화물선적·화물하역과 기타 이

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0조 선박이 화물선적항에서 출항하기 이전에 불가항력 또는 기타 운송인과 탁송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쌍방 모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서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계약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수비를 이미 지급한 경우, 운송인은 반드시 운수비를 탁송인에게 반화하여야 한다.

화물을 이미 배에 선적한 경우, 탁송인은 반드시 화물 하역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미 선하증권을 서명하여 발급한 경우, 탁송인은 반드시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1조 불가항력 또는 기타 운송인과 탁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선박이 계약에서 약정한 목적항에 화물을 하역할 수 없는 경우,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한 것 이외에 선장을 화물을 목적항 인근의 안전한 항구 또는 지점에 하역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써 이미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선장이 화물 하역을 결정한 경우, 반드시 적시에 탁송인 또는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탁송인과 수하인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절 항해용선계약의 특별규정

제92조 항해용선계약은 선박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박 또는 선박의 부분 창

고를 제공하여 약정한 화물을 선적하고, 하나의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운송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약정한 운수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93조 항해용선계약의 내용은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칭·선박명·선박국적·화물중량·용적·화물명·출항항·목적항·선적기한·하역기한·운수비비·체선료·선적기간 단축환불금 및 기타 관련사항을 포함한다.

제94조 이 법 제47조 제49조의 규정은 항해용선계약 임대인에게 적용한다.

이 장의 기타 관련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규정은 오직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항해용선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적용한다.

제95조 항해용선계약에 의거하여 운수하는 화물에 대하여 서명인도한 선하증권은 선하증권 소유자가 임차인이 아닌 경우, 운송인과 그 선하증권 소유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선하증권의 약정을 적용한다.

단, 선하증권 중 항해용선 계약조항의 적용을 명확히 기재한 경우, 동 항해용선계약의 조항을 사용한다.

제96조 임대인은 반드시 약정한 선박을 제공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동의를 통하여 선박을 교체할 수 있다. 단, 제공한 선박 또는 변경한 선박이 계약의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거절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하여 약정한 선박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7조 임대인이 약정한 선적 기한 내에 선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단, 임대인이 선박의 도착연기·착오상황이 있는 선박의 선적항 도착 예정일을 임차인에게 통지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과실로 선박제공이 지연되어 임차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8조 항해용선계약의 화물선적, 하역기한 및 그 계산방법과 화물선적, 하역기한 후의 초과된 체선료와 화물선적, 화물하역을 조기 완성 시의 단축환불금은 쌍방의 약정에 따른다.

제99조 임차인은 임차한 선박을 전대할 수 있다. 전대한 후 원계약에서 약정한 권리·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00조 임차인은 반드시 약정한 화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화물을 교체할 수 있다. 단, 교체한 화물이 임대인에게 불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다.

약정한 화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1조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에서 약정한 하역항에 화물을 하역하여야 한다.

계약에 임차인이 하역항을 선택하는 조항을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하역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선장이 약정한 항구 중 임의의 한 항구를 선택하여 하역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하역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항구를 선택하여 하역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절 복합운송계약의 특별규정

제102조 이 법에서 복합운송계약이란, 복합운송인이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운수방식으로, 그 중 하나의 종류는 해상운수방식으로 화물을 인수지점부터 목적지까지 운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책임지며, 전과정의 운수비를 수취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항의 복합운송인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본인의 명의로 운송위탁인과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103조 복합운송인의 복합운송화물에 대한 책임기간은 화물의 인수시점으로부터 화물의 인도시점까지이다.

제104조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을 조직하며 운

수의 전과정을 담당한다.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에 참여하는 각 구간의 운송인은 복합운송계약의 각 구간의 운수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상호간의 책임을 약정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조항의 계약은 복합운송인이 전과정의 운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5조 화물의 멸실 또는 손괴가 복합운수의 어느 한 운수구간에서 발생한 경우, 복합운송인의 배상책임과 책임한도액은 해당 구간의 운수방식을 조정하는 유관법률규정을 적용한다.

제106조 화물의 멸실 또는 손괴가 발생한 운수구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복합운송인은 반드시 이 장의 운송인배상책임과 책임한도액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해상여객운수계약

제107조 해상여객운수계약이란, 운송인이 여객운송에 대한 적합한 선박으로 해로를 통하여 여객 및 그 수하물을 하나의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운송하여 여객이 표값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08조 이 장에서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一)"운송인"이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본인의 명의로 여객과 해상여객운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二)"실제운송인"이란, 운송인의 위탁을 수용하여 여객운송 또는 부

분운송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위탁양도를 수용하여 이러한 운송에 종사하는 기타인을 포함한다.

(三)"여객"이란, 해상여객운수계약에 근거하여 운송하는 자를 말하며, 운송인의 동의를 거쳐 해상화물운수계약에 근거하여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자도 여객으로 간주한다.

(四)"수하물"이란, 해상여객운수계약에 근거하여 운송인이 선적하는 일체의 물품과 차량을 말하며, 살아있는 동물은 제외한다.

(五)"수하물"이란, 여객이 스스로 휴대·보관 또는 객실에 싣는 수하물을 말한다.

제109조 이 장의 운송인에 대한 책임규정은 실제운송인에게도 적용한다. 이 장의 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에 관한 책임규정은 실제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에게도 적용한다.

제110조 여객의 승선표는 해상여객운수계약의 성립에 대한 증명서이다.

제111조 해상여객운수의 운송기간은 여객의 승선시점부터 하선시점까지이다.

승선표 가격에 접송(接送)비용을 포함한 경우, 운송기간은 운송인이 수로를 통하여 여객을 해안에서 선상까지 영접하는 시간과 선상에서 해안까지 전송하는 시간을 포함한다. 단, 여객이 항구선착장 안에서 부두 위 또는 기타 항구시설 내에 머무르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여객수하물의 운송기간은 전항의 규정과 같다. 여객수하물 이외의

기타 수하물의 운송기간은 여객이 수하물을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에게 인도하는 시점부터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이 여객에게 반환하는 시점까지이다.

제112조 여객의 무임승선·승급승선 또는 초과 운항승선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표값을 보충 지급하여야 하며 운송인은 규정에 따라 표값을 증가하여 수취할 수 있다.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선장은 적절한 시점에서 하선을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운송인은 그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3조 여객은 금지물품 또는 가소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성 물품을 수하물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송인은 어느 시간·장소에서든지 여객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대하거나 또는 수하물에 포함한 위반금지물품을 하역·폐기할 수 있고,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도 있으며, 유관부서에 송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4조 이 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여객 및 그 수하물의 운송기간 중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이 고용 또는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의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여객의 상해·사망 또는 수하물의 멸실·손괴를 초래한 경우, 운송인은 반드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의 과실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이 조항의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황은 제외한다.

여객의 상해·사망 또는 수하물의 멸실·손괴가 선박의 침몰·충돌·좌초·폭발·화재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선박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이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객의 수하물 이외의 기타 수화물의 멸실·손괴가 어떠한 종류의 사고로 야기되었더라도,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이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5조 운송인이 증명을 통하여 여객의 상해·사망 또는 수하물의 멸실·손괴가 여객 본인의 과실 또는 여객과 운송인의 공동의 과실로 초래된 경우,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상응하는 정도의 감면이 가능하다.

운송인의 증명을 통하여 여객의 상해·사망 또는 수하물의 멸실·손괴가 여객 본인의 고의로 인하여 초래되었거나, 여객의 상해·사망이 여객 본인의 건강상황으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6조 운송인은 여객의 화폐·금은진주보석·유가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의 멸실·손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7조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황 이외에 운송인은 매회 해상여객의

운수 중의 배상책임한도액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一)여객의 사상사고인 경우, 여객 1인당 46666계산단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二)여객이 자체 휴대한 짐이 멸실·손괴된 경우, 여객 1인당 833계산단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三)차량에 탑재한 짐이 멸실·손괴된 경우를 포함한 여객 차량은 1대당 3333계산단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四)이 항의 제(二)·(三)항 이외의 여객의 기타 짐이 멸실·손괴된 경우, 매 여객에 대하여 1200계산단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여객은 운송인의 여객차량과 여객차량 이외의 기타 수하물 손실에 대한 배상면제액을 약정할 수 있다. 단, 차량 한대 손실의 면제액은 117계산단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여객 한 명당 차량 이외의 기타 수하물에 대한 면제액은 13계산단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량 한대당 또는 여객 한 명당의 차량 이외의 기타 수하물의 손실배상액을 계산할 시 마땅히 약정에 따라 운송인의 배상면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운송인과 여객은 이 법 제1항이 규정하는 배상책임한도액보다 높게 서면으로 약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간의 해상여객운수에 있어 운송인의 배상책임

한도액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제정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취득한 후 시행한다.

제118조 여객의 인명상해·사망 또는 수하물의 멸실·손괴가 운송인의 고의로, 또는 손해를 초래할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경솔하게 대처하거나 또는 아무런 대처를 취하지 아니하여 초래된 것이 증명된 경우, 운송인은 이 법 제116조와 제117조의 배상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객의 인명상해·사망 또는 수하물의 멸실·손괴가 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손해를 초래할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경솔하게 대처하거나 또는 아무런 대처를 취하지 아니하여 초래된 것이 증명된 경우, 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은 이 법 제116조와 제117조의 배상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9조 수하물에 뚜렷한 손괴가 발생한 경우, 여객은 반드시 다음에 열거하는 규정에 따라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一)자체휴대수하물은 반드시 여객이 배를 떠나기 이전 또는 배를 떠날 시 제출하여야 한다.

(二)기타 수하물은 반드시 수하물을 반환하기 이전 또는 반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하물의 손괴가 불명확하여 여객이 배를 떠날 시 또는 수하물 교

환 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및 수하물이 멸실된 경우, 여객은 반드시 배를 떠날 시 또는 수하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여객이 이 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무파손된 완전한 수하물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하물 반환 시 여객이 이미 운송인과 수하물에 대하여 함께 검사 또는 조사를 진행한 경우, 서면통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120조 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에게 제기한 배상청구가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그 행위가 고용 또는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한 경우, 이 법 제115조·제116조·제117조의 항변사유와 배상책임제한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있다.

제121조 운송인이 여객운송 또는 부분운송을 실제운송인이 이행하도록 위탁한 경우, 여전히 이 장 규정에 의거하여 전체 과정의 운송에 대하여 지속적인 책임이 있다. 실제운송인이 운송을 이행한 경우, 운송인은 반드시 실제운송인의 행위 또는 실제운송인의 고용인·대리인에 대하여 고용 또는 위탁받은 범위 내의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

제112조 운송인은 이 장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책임지거나 이 장이 부여한 권리를 포기한 어떠한 협의도, 실제운송인이 서면을 통하여

명확히 동의한 경우, 실제운송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실제운송인의 동의여부는 이 특별협의의 운송인에 대하여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3조 운송인과 실제운송인 모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그 책임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4조 여객의 인명상해·사망 또는 수하물의 멸실·손괴를 운송인·실제운송인 및 그들의 고용인·대리인에게 각각 예상청구를 제출한 경우, 배상총액은 이 법 제117조 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5조 이 법 제121조부터 제124조까지의 규정은 운송인과 실제운송인 사이의 상호 배상책임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6조 해상여객운수계약 중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의 하나가 포함된 조항은 무효하다.

(一)운송인이 여객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법정책임을 면제한 조항

(二)이 장이 규정하는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절하한 조항

(三)이 장이 규정하는 증거제출책임에 대하여 상반된 약정을 한 조항

(四)여객이 배상청구를 제출할 권리를 제한한 조항

전항이 규정하는 계약조항의 무효는 계약의 기타 조항의 효력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장 선박임차계약

제1절 일반규정

제127조 이 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권리·의무의 규정에 대하여 오직 선박임차계약에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상이한 약정이 없을 시 적용한다.

제128조 선박임차계약은 정기선박임차계약과 선박만을 임차하는 계약을 포함하여 모두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절 정기선박임차계약

제129조 정기선박임차계약이란, 선박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약정한 선원을 배치한 선박을 제공하고 임차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약정한 용도에 의거하여 사용하며 임대비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제130조 정기선박임차계약의 내용은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칭·선명·선박국적·선박급수·톤단위·용적·선박속도·연료소모·항해구역·용도·선박임차기간, 교선과 환선 시간·지점·조건, 임차금과 지급 그리고 기타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제131조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에서 약정한 시간에 따라 선박을 인도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임대인이 선박을 연기한 상황과 선박예정기간에 교선항에 도착한 날짜를 임차인에게 통지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선박을 지속적인 임차사용결정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과실로 인하여 선박제공을 연기하여 임차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2조 임대인이 선박을 인도할 시, 선박이 항해에 적절하도록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인도한 선박은 반드시 약정한 용도에 적절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33조 선박이 임차기간 내에 약정한 항해에 적절한 상태 또는 기타의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최대한 빨리 복구하여야 한다.

선박이 약정한 항해에 적절한 상태 또는 기타 상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상운항을 24시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한 영업운항시간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차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술한 상태가 임차인이 조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 임차인은 반드시 선박이 약정한 항해구역 내의 안전한 항구 또는 지

점 간에 약정한 항해운수의 종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35조 임차인은 반드시 선박을 합법적인 화물을 운송하는데 사용할 것을 약정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선박을 활동물 또는 위험물을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차인이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반드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6조 임차인은 선박의 영업운수를 선장에게 지시할 권리가 있으나 정기선박임차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7조 임차인은 임차한 선박을 재차 임대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재차 임대하는 상황을 적시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차한 선박을 재차 임대한 후에도 원래의 선박임차계약으로 약정한 권리와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38조 선박소유자가 이미 임대한 선박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정기선박임차계약에 약정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 반드시 적시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박소유권 양도 이후 원선박임차계약은 양수인과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9조 계약기간에 선박이 해난구조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구조비용, 손실

배상, 선원이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부분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후의 구조비용의 절반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140조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의 약정에 의거하여 임차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의 약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임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41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에서 약정한 기타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선상의 임차인의 화물과 재산 및 선박전대수입에 대한 유치권을 갖는다.

제142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박을 반환할 시, 동 선박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선박을 인도할 시와 같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선박 자체의 자연적인 마모로 인한 손실을 제외한다.

선박이 선박인도 시와 같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수리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3조 합리적인 계산을 통하여 마지막 항해를 완료한 날짜를 대부분 계약에서 약정하는 선박반환날짜로 간주한다. 단, 계약에서 약정하는 선박반환날짜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항해를 완성하도록 날짜를 초과하여 선박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에서 약정하는 임차금율에 의거하여 임차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의 임차금율이 계약에서 약정한 임차금율보

다 높은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시장의 임차금율에 의거하여 임차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절 선박만을 임차하는 계약

제144조 선박만을 임차하는 계약이란, 선박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선박을 제공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임차인이 점유·사용·운영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임차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45조 선박만을 임차하는 계약의 내용은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칭·선박명·선박국적·선박등급·톤단위·용적·항해구역·용도·임차기간, 선박인도와 선박반환의 시간·지점·조건·선박검사, 선박의 보존·수리, 임차금 지급, 선박의 보험, 계약해제시간과 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을 포함한다.

제146조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에서 약정한 항구 또는 지점에, 계약에서 약정한 시간에 의거하여 임차인에게 선박 및 선박증서를 인도하여야 한다.

선박을 인도할 시, 임대인은 반드시 선박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인도한 선박은 반드시 계약에서 약정한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전항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47조 선박만을 임차하는 기간에 임차인은 반드시 선박의 보존과 유지 및 수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148조 선박만을 임차하는 기간에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에서 약정한 선박의 가치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동의한 보험방식으로써 선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49조 선박만을 임차하는 기간에 임차인이 선박의 점유·사용·운영에 대한 원인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권익에 영향을 주거나 손실을 조성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영향을 제거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박소유권 분쟁 또는 임대인이 부담한 채무로 인하여 선박이 압류된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의 권리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0조 선박만을 임차하는 기간에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임차인의 계약의 권리와 의무 또는 선박만을 임차하는 방식으로써 선박을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1조 임차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임대인은 선박만을 임차하는 기간에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반드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2조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의 약정에 의거하여 임차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에 약정한 시간에 의거하지 아니하곤 임차금 지급을 연속 7일 초과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선박의 멸실 또는 실종이 발생한 경우, 임차금을 반드시 선박의 멸실 또는 그 최후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며, 임차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반드시 비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3조 이 법 제134조, 제135조 제1항, 제142조와 제143조의 규정은 선박만을 임차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154조 선박만을 임차하는 계약에 있어 임차구매조항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의 약정에 의거하여 임대인에게 임차구매비용의 지급을 완료하였을 시, 선박소유권은 임차인에게 귀속된다.

제7장 해상예선계약

제155조 해상예선계약이란, 예선인이 예인선을 사용하여 예선되는 물건을 해로를 통하여 한 지역에서 다른 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피예선인이 예선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장의 규정은 항구 내에서 선박에 대하여 제공하는 예선서비스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 해상예선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해상예선계약의 내용은

주로 예선인과 피예선인의 명칭·주소, 예인선과 피예선물의 명칭과 주요 척도, 예인선 마력, 예선 시작지·목적지, 예선시작날짜, 예선비용, 지급방식 및 기타 관련사항을 포함한다.

제157조 예선일방은 예선을 시작하기 전과 예선을 진행하는 도중에 예인선을 예선과 항해에 적절한 상태로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선원, 예인선 용구, 필수 공급품 및 동 항해에 필요한 기타 장치, 설비를 타당하고 적절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피예선일방은 예선을 시작하기 전과 예선을 하는 도중에 피예선물의 예선준비를 하여야 하며 피예선물이 예선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고, 예선 일방에게 피예선물의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관련 조사기구가 피예선물이 예선에 적합함을 인정하여 발급한 증서와 관련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8조 예선하기 전, 불가항력 또는 기타 쌍방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쌍방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서로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예선비용을 이미 지급한 경우, 예선일방은 피예선일방에게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9조 예선을 시작한 후, 불가항력 또는 기타 쌍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쌍방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서로가 배상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한다.

제160조 불가항력 또는 기타 쌍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피예선물을 목적지에 예선할 수 없는 경우, 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예선인은 목적지 근처지점 또는 예인선 선장이 선정한 안전한 항구에 피예선물을 피예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계약을 이미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1조 피예선인이 예선비용과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약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예선 일방은 피예선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향유한다.

제162조 해상예선과정 중 예선인 또는 피예선인이 입은 손실이 일방의 잘못인 경우, 잘못을 조성한 일방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쌍방과실인 경우, 각 장은 과실정도의 비례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예선인의 손실이 다음의 원인으로 조성된 경우, 비록 전항의 규정이 예선일방을 통하여 증명되었더라도 예선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一)예인선의 선장·선원·도선원 또는 예선인의 기타 고용인·대리인이 예인선을 운전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二)예인선과 해상구조·인명구조 또는 재산구조를 기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이 조항의 규정은 오직 해상예선계약에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63조 해상예선과정 중 예선인 또는 피예선인의 과실로 인하여 제삼자의 인명 또는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예선인과 피예선인은 제삼자에게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계약 상 별도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방이 연대지급한 배상이 그 책임비례를 초과한 경우, 타일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향유한다.

제164조 예인선소유자가 그가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바지선에 적재한 화물을 예선함에 있어 해로를 통하여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해상화물운수로 간주한다.

제8장 선박충돌

제165조 선박충돌이란, 선박이 해상 또는 해상과 서로 통하는 항해수역에서 접촉으로 손해를 일으킨 사고를 말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선박은 이 법 제3조가 말하는 선박과 충돌한 군사적 또는 정부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타 모든 선박을 포함한다.

제166조 선박이 충돌을 일으킨 경우, 선박의 선장은 동 선박과 선상인원의 안전이 급박하지 아니한 상황 하에서 서로 충돌한 선박과 선상인원에 대하여 반드시 최선을 다하여 구조하여야 한다.

충돌한 선박의 선장은 마땅히 최대한 해당 선박의 명칭·선박국적항·출발항·목적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7조 선박이 충돌을 발생한 것이 불가항력 또는 어느 일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타의 원인 또는 알아낼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조성된 경우, 충돌한 각 일방은 서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8조 선박의 충돌이 일방 선박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과실이 있는 선박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69조 선박충돌의 발생이 충돌선박의 쌍방과실인 경우, 각 선박은 과실정도의 비례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과실정도가 비슷하거나 또는 과실정도의 비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 평균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쌍방과실의 선박충돌을 조성한 선박 및 선상화물과 기타 재산의 손실에 대하여 전항에서 규정하는 비례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충돌이 제삼자에게도 재산손실을 조성한 경우, 각 선박의 배상책임음 모두 반드시 책임져야할 비례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상호 과실이 있는 선박은 제삼자의 인명상해·사망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일방 선박의 연대지급배상이 이 조항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례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 과실이 있는 선박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70조 선박이 조종착오 또는 항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비록 실제로

기타 선박과 충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기타 선박 및 선상인원·화물·재산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장 해난구조

제171조 이 장의 규정은 해상 또는 바다와 통하는 항해수역의 위험에 처한 선박과 기타 재산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조에 적용한다.

제172조 이 장에서 열거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一) "선박"이란, 이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선박과 그와 구조관계가 발생하는 모든 군사적 또는 정부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말한다.

(二) "재산"이란, 비영구적으로 또는 비고의적으로 해안선에 정착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운송의 위험비용을 포함한다.

(三) "구조비용"이란,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구조일방이 반드시 구조일방에 지급하는 모든 구조사례금·보수·보상을 말한다.

제173조 이 장의 규정은 해상에 이미 고정된 위치의 해저광물자원의 탐색·개발에 종사하거나 또는 고정식·유동식 평면대와 이동식 근해 굴착장치에서 발생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4조 선장은 동 선박과 선상인원의 안전이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마땅히 최선을 다하여 해상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다.

제175조 구조하는 구조자가 피구조인과 해난구조에 대하여 협의를 체결한 경우, 구조계약은 성립한다.

위험에 처한 선박의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대표하여 구조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위험에 처한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선상재산소유자를 대표하여 구조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제176조 다음에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가 일방 당사자의 기소 또는 쌍방당사자의 중재협의 통한 경우, 분쟁을 수리한 법원 또는 중재기구는 구조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一)계약이 부정당한 경우 또는 위험상황의 영향 하에서 체결하여 계약조항이 뚜렷이 공평하지 아니한 경우

(二)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구조비용이 실제 제공한 구조활동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제177조 구조작업과정 중 구조일방은 피구조일방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의무가 있다.

(一)반드시 신중하고 성실하게 구조를 실시한다.

(二)반드시 신중하고 성실하게 환경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킨다.

(三)합리적인 필요 하에서 기타 구조일방의 원조를 요청한다.

(四)피구조일방이 기타 구조자가 구조작업에 참여하기를 합리적으로 요구한 경우, 동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나 단, 요구가 불합

리한 경우, 원구조자의 구조보수액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8조 구조작업과정 중 피구조자는 구조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의무가 있다.

(一)구조자와 힘을 합쳐 협동한다.

(二)반드시 신중하고 성실하게 환경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킨다.

(三)구조를 요구한 선박 또는 기타 재산을 이미 안전지역에 이송하였을 경우, 구조자가 제출한 합리적인 이동인도요구를 적절히 수용한다.

제179조 구조자의 위험에 처한 선박과 기타 재산에 대한 구조가 효과적인 경우, 구조보수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구조가 무효한 경우, 이 법 제182조 또는 기타 법률의 별도의 규정 또는 계약의 별도 약정 이외에 구조비용을 획득할 권리가 없다.

제180조 구조보수의 확정은 반드시 구조작업에 대한 격려를 구현하여야 하며 종합적으로 다음 각 항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一)선박과 기타 재산의 구제 가치

(二)구조자가 환경오염손해의 방지 또는 감소에 대한 기능과 노력

(三)구조자의 구조성공효과

(四)위험의 성질과 정도

(五)구조자가 선박, 기타 재산과 인명구조 부분에서의 기능과 노력

(六)구조자가 투입한 시간·지출비용과 조성된 손실

(七)구조자 또는 구조설비가 담당하는 책임위험과 기타 위험

(八)구조자가 제공하는 구조활동의 적절성

(九)구조작업에 사용하는 선박과 기타 시설의 가용성과 사용상황

(十)구조설비의 준비사용상황, 효능과 설비의 가치

구조보수는 선박과 기타 재산이 구조로 인하여 획득한 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1조 선박과 기타 재산의 구조를 통하여 획득한 가치란, 선박과 기타 재산이 구조를 획득한 후의 가치 또는 실제 매도 시의 수입을 예측하여 관련 세금과 세관, 검역, 검사비용 및 하역, 보관, 예측가격, 매도로 생긴 비용을 공제한 후의 가치를 말한다,

전항이 규정하는 가치는 선원이 구조한 개인물품과 구조된 여객의 휴대수하물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2조 환경오염손해의 위험을 조성한 선박 또는 선상화물에 진행한 구조에 대하여 구조자가 이 법 제180조 규정에 따라 획득한 구조보수가 이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획득할 수 있는 특별보상보다 적은 경우, 구조자는 이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박소유자로부터 구조비용에 해당하는 특별보상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

구조자가 전항에서 규정하는 구조작업을 진행하여 환경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감소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이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구조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보상을 별도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증가한 액수는 구조비용의 30%에 달할 수 있다. 분쟁을 수리한 법원 또는 중재기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고 동시에 이 법 제180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더 많은 특별보상액수를 판결 또는 재결할 수 있다. 단,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증가부분이 구조비용의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서 말하는 구조비용이란 구조자가 구조작업 중 직접 지급한 합리적인 비용 및 실제 사요한 구조시설, 투입한 구조인원의 합리적인 비용을 말한다. 구조비용의 확정은 반드시 이 법 제180조 제1항 제(八)·(九)·(十)항의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이 조항이 규정하는 전체의 특별보상은 오직 구조자가 이 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획득할 수 있는 구조보수를 초과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일방이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특별보상이 구조보수를 초과한 차액부분이다.

구조자의 과실로 인하여 환경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구조자가 획득한 특별보상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이 조항의 규정은 선박소유자의 기타 피구조자에 대한 구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3조 구조보수의 금액은 반드시 구조된 선박과 기타 재산의 각 소유자가 선박과 기타 각 항목의 재산에 의거하여 각자의 구조받은 가치가 전체의 구조받은 가치에 차지하는 비례에 따라 부담한다.

제184조 동일한 구조작업에 참가한 각 구조자의 구조보수는 반드시 이 법 제180조 규정의 표준에 근거하여 각방이 협상하여 확정한다. 협상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을 수리한 법원에 판결을 신청하거나 각방이 협상을 통하여 신청한 중재기구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5조 구조작업 중 인명을 구조한 구조자는 구조한 인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 선박 또는 기타 재산을 구조하거나 환경오염손해를 방지·감소시킨 구조자가 획득한 구조비용 중에서 합리적인 몫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

제186조 다음에 열거하는 구조행위는 구조비용을 획득할 권리가 없다.

(一)정상적으로 예선계약 또는 기타 서비스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여 구조를 실시한 경우, 단, 상술한 의무의 이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노무를 제공한 경우는 제외

(二)위험에 처한 선박의 선장·선박소유자 또는 기타 재산소유자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를 실시한 경우

제187조 구조자의 과실로 인하여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가중한 경우, 또는 구조자가 사기 또는 기타 불성실한 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구조자에

게 지급한 구조비용을 취소하거나 감소하여야 한다.

제188조 피구조인은 구조작업의 종결 후, 구조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구조비용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상황 하에서 구조된 선박소유자는 반드시 구조된 화물의 반환 이전에 최선을 다하여 화물의 소유자에게 그가 부담하여야 하는 구조비용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조인의 요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구조받은 선박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담보를 제공하기 이전에 구조자의 동의없이 구조한 선박과 기타 재산을 구조작업 완료 후의 최초 도착항구 또는 지점에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9조 구조비용청구를 수리한 법원 또는 중재기구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피구조인이 구조자에게 먼저 적당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 또는 재결할 수 있다.

피구조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액을 지급한 후, 이 법 제18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공한 담보금액은 반드시 상응하게 감소하여야 한다.

제190조 구조된 지 만90일이 지난 선박과 기타 재산에 대하여 만약 피구조인이 구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족할만한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구조자가 법원에 강제경매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관할 수 없거나, 보관이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보관비용이 구조선박과 기타 재산의 가치를 초과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조기 경매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경매소득금액은 보관과 경매과정 중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후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조비용을 지급한다. 잔여 금액은 피구조인에게 반환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경매일로부터 만1년이 되도록 어떠한 자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고에 귀속된다. 부족한 금액은 구조자가 피구조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91조 동일 선박소유자의 선박 사이에서 구조를 실시한 경우, 구조자의 구조비용을 획득할 권리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2조 국가 관련 주관기관이 종사하거나 관리하는 구조작업의 경우, 구조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구조작업에 대한 권리와 보상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제10장 공동해손

제193조 공동해손이란, 동일한 해상운항과정 중 선박·화물과 기타 재산이 공동 위험에 직면하여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취하는 조치로 직접 조성된 특수한 희생과 지급된 특수한 비용을 말한다.

운항과정 중 또는 운항과정의 완료 후를 막론하고 선박 또는 화물

의 지연으로 인하여 조성된 손실은 항해기간손실과 시세손실 및 기타 간접손실을 포함하여 모두 공동해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4조 선박이 우발적으로 또는 기타 특수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안전하게 동 항해과정을 완료하기 위하여 피난항·피난지점으로 기항하거나 선적항·선적지점으로 회항하여 필요한 수리를 진행한 경우, 동 항구 또는 지점에서 초과정박기간에 지급한 항구비용, 선원의 보수, 보급품, 선박이 소모한 연료, 자재, 수리를 위한 하역, 저장, 선적 또는 선상의 화물, 연료, 자재 및 기타 재산의 이동으로 조성된 손실, 지급한 비용은 반드시 공동해손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95조 공동해손에 포함할 수 있는 특수비용을 대신하기 위하여 지급한 추가비용은 대체비용으로써 공동해손에 포함할 수 있다. 단, 공동해손에 포함한 대체비용의 금액은 대체된 공동해손의 특수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6조 공동해손부담청구를 제기한 일방은 반드시 그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그 손실이 공동해손에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97조 공동해손의 특수희생, 특수비용을 발생시킨 사고가 항해과정 중 일방의 과실로 조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일방의 공동해손의 분담을 요구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비과실자 또는 과실자는 동 과실로 인한 배상청구 또는 항변을 진행할 수 있

다.

제198조 선박·화물·운임의 공동해손으로 희생된 금액은 다음에 열거하는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一)선박에 관한 공동해손으로 희생된 금액은 실제 지급한 수리비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헌 부속품을 새 부속품으로 교환한 것을 제외한 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선박을 미처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희생으로 조성된 합리적인 가치하락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단, 산정된 수리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에 발생한 실제의 전체적 손실 또는 수리비용이 수리 후의 선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해손의 희생금액은 동 선박이 양호해진 상태 하에서 산정된 가격에 의거하여 공동해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정된 수리비와 동 선박이 손해를 입은 후의 가치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으로 계산한다.

(二)화물에 관한 공동해손으로 희생된 금액은 화물이 멸실된 경우, 화물선적 시의 가치에 의거하여 보험료와 운임을 더하고, 희생으로 인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는 운임을 제한 후 계산한 화물파손은 파손 정도에 대하여 협의 전 판매한 경우 화물선적 시의 가치에 의거하여 보험료와 운임을 더하고 매출화물이 순수하게 얻은 차액을 계산한다.

(三)운임에 관한 공동해손으로 희생된 금액은 화물의 희생으로 조

성된 운임의 손실금액에 의거하여 운임을 얻기 위하여 원래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희생으로 인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영업운임은 계산한다.

제199조 공동해손은 반드시 수익자에 의하여 각자의 분담가액의 비례에 따라 분담한다.

선박·화물·운임의 공동해손부담의 가치는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一)선박에 대한 공동해손의 분담가액은 선박의 항해과정 종료 시의 완전품가액에 의거하여 공동해손에 속하지 아니하는 손실금액을 공제하고 계산하거나 선박의 항해과정 종료 시의 실제가액에 의거하여 공동해손희생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二)화물에 대한 공동해손 분담가액의 경우, 화물 선적 시의 가치에 의거하여 보험료와 운임을 더하고 공동해손에 속하지 아니하는 손실금액과 도착지급운임을 공제하고 계산한다.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 전 판매된 경우, 판매 순수소득금액에 의거하여 공동해손희생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여객의 수하물과 개인물품은 공동해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三)운임분담가치는 운송인이 위험을 책임지도 항해과정 종료 시 취득할 권리를 가진 운임에 따라 공동해손 사고발생 후 취득할 운임, 동 항해과정을 완료하고 지급하는 영업운송비용을 감한

후, 공동해손희생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200조 신고하지 아니한 화물 또는 허위로 신고한 화물은 반드시 공동해손 분담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특수희생은 공동해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당하게 화물의 실제가치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실제가치에 의거하여 공동해손을 분담한다. 공동해손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가액에 의거하여 희생금액을 계산한다.

제201조 공동해손의 특수희생과 미리 지급한 공동해손 특수비용에 대하여 반드시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선불한 공동해손 특수비용에 대하여 선원보수·보급품과 선박이 소모한 연료비·재료비 이외에 반드시 수속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202조 이익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각 분담자는 반드시 공동해손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증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써 공동해손 담보를 진행하는 경우, 보증금은 반드시 공동해손정산인이 보관인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보증금의 제공·사용·반환은 각방의 최종적인 분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3조 공동해손 전산은 계약에서 약정한 정산규칙을 적용한다. 계약에서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장 해상사고 배상책임제한

제204조 선박소유자·구조인은 이 법 제207조에 열거한 해상사고 배상청구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전항에서 말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임차인과 선박경영인을 포함한다.

제205조 이 법 제207조에 열거된 해상사고 배상청구는 선박소유자·구조인 본인에게 제기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나 과실에 대하여 책임자에게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원은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6조 피보험자가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동 해상사고 배상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배상책임제한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제207조 다음에 열거하는 해상사고의 배상청구는 이 법 제208조와 제209조가 별도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도 배상책임의 기초와 관련없이 책임자가 모두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一)선박 또는 선박의 운항·구조작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상해·사망 또는 재산의 멸실·훼손(항만축조물·항구·수로·항해보조시설에 대한 파손을 포함한다) 및 이로 인하여 조성

된 손실에 상응하는 배상

(二)해상화물운송이 교부연기로 인하여 또는 여객 및 그 수하물 운수가 도착지연으로 인하여 조성된 손실의 배상청구

(三)선박운항 또는 구조작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계약 상의 권리 이외의 권리침해행위로 발생한 기타 손실의 배상청구

(四)책임자 이외의 기타인이 책임자가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손실을 모면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배상청구 및 동 조치로 인하여 더욱 손실을 증가시킨 데 대한 배상청구

전항에서 열거한 배상청구는 제출한 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四)항에서 언급한 책임자의 계약 약정에 의거한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책임자의 지급책임은 이 조항의 배상책임제한의 규정을 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8조 이 장의 규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구조비용 또는 공동해손분담에 대한 청구

(二)중화인민공화국 국제유류오염 손해민사책임 공약규정의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三)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원자력책임제한공약에 참가한 규정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청구

(四)핵추진선박이 조성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청구

(五)선박소유자 또는 구조인의 고용인이 제출한 배상청구는 노무계약을 조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구조인이 이러한 종류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으며, 또한 이 법률은 이 장이 규정하는 배상한도액보다 높게 규정을 정한다.

제209조 배상청구를 일으킨 손실이 책임자의 고의 또는 손실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백히 예상하면서도 경솔한 작위 또는 무작위로 인하여 조성된 것이 증명된 경우, 책임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제210조 이 법 제211조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해상사고 배상책임 제한은 다음에 열거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배상한도액을 계산한다.

(一)인명상해·사망에 관한 배상청구

1.총 톤수가 300톤부터 500톤까지의 선박은 배상한도액이 333,000 계산단위이다.

2.총 톤단위가 500톤을 초과한 선박은 500톤 이하의 부분에 이 조항의 제1목의 규정을 적용하고, 500톤 이상의 부분은 반드시 다음에 열거하는 액수를 더하여야 한다. 501톤부터 300톤은 톤당 500 계산단위를 더한다. 3,001톤부터 30,000톤은 톤당 333 계산단위를 더한다.

30,001톤부터 70,000톤은 톤당 250 계산단위를 더한다.

70,000톤을 초과한 부분은 톤당 167 계산단위를 더한다.

(二)비인명상해·사망에 관한 배상청구

1. 총 톤수가 300톤부터 500톤의 선박은 배상한도액이 167,000 계산단위이다.

2. 총 톤수가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은 500톤 이하 부분에 이 조항 제1목의 규정을 적용하고 500톤 이상 부분은 반드시 다음에 열거하는 액수를 더한다. 501톤부터 30,000톤은 톤당 167 계산단위를 더한다.

30,001톤부터 70,000톤은 톤당 125 계산단위를 더한다.

70,000톤을 초과하는 경우, 톤당 87 계산단위를 더한다.

(三)제(一)항의 규정에 의거한 한도액이 전체 인명상해·사망에 지급하는 배상청구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은 반드시 비인명상해·사망의 배상청구와 병렬하고 제(二)항 액수 중에서 비례에 의거하여 배상받는다.

(四)제(三)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인명상해·사망 배상청구의 경우, 항만축조물·항구·수로와 항해보조시설의 손해에 제출한 배상청구는 마땅히 제(二)항 중의 기타 배상청구보다 우선적으로 배상받아야 한다.

(五)구조작업이 선박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피구조선 상에서 구조작업을 진행한 구조인은 그 책임한도액이 총 톤수가

1,500톤이 되는 선박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총 톤단위가 300톤이 되지 아니하는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사이의 운수에 종사하는 선박 및 연해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그 배상한도액을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211조 해상여객운수의 여객의 인명상해·사망 배상책임제한은 46,666계산단위에 의거하여 선박증서에서 규정한 탑승여객정원을 곱하여 배상한도액을 계산하며, 최고 25,000,000계산단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간의 해상여객운수의 여객인명상해·사망에 대한 배상한도액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212조 이 법 제210조와 제211조에서 규정하는 배상한도액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 선박소유자·구조인 본인과 그들이 그 행위나 과실에 대하여 책임자에게 제기한 청구의 금액에 적용한다.

제213조 책임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제한을 요구한 경우,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책임제한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기금액수는 각각 이 법 제210조·재211조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이며, 책임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금설립일까지 상응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제214조 책임자가 책임제한기금을 설립한 후 책임자에게 청구를 제기한 모든 사람은 책임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책임제한기금을 설립한 책임자의 선박 또는 기타 재산이 이미 차압되었거나 기금설립인이 이미 저당물을 인도한 경우, 법원은 마땅히 즉시 압류를 해제하거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215조 이 장 규정의 책임제한을 향유하는 자가 동일사고의 청구인에게 반대 청구를 제기한 경우, 쌍방의 청구금액은 당연히 상호 소멸되며, 이 장에서 규정하는 배상한도액은 단지 두 청구금액 사이의 차액에만 적용한다.

제12장 해상보험계약

제1절 일반규정

제216조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의한 보험객체의 손실과 발생되는 책임에 대하여 배상하고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전항에서 말하는 보험사고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해상항해와 관련된 내하 또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포함하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제217조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은 주로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을 포함한다.

(一)보험자 명칭

(二)피보험자 명칭

(三)보험목적

(四)보험가치

(五)보험금액

(六)보험책임과 면책사고

(七)보험기간

(八)보험료

제218조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은 보험목적이 될 수 있다.

(一)선박

(二)화물

(三)선박영업운송수입·운임·용선비용·승선료

(四)화물예상수익

(五)선원임금과 기타 보수

(六)제삼자에 대한 책임

(七)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기타 재산과 발생된 책임과 비용

보험자는 전항의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에 대하여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원보험자는 재보험의 이익을 향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9조 보험목적의 보험가치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와 약정한다.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가치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가치는 다음에 열거하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一)선박의 보험가치는 보험책임이 시작될 때의 선박의 가치로써, 선체·기계·설비의 가치 및 선상연료·자재·도구·보급품·담수(淡水)의 가치와 보험료를 포함하는 총합이다.

(二)화물의 보험가치는 보험책임이 시작될 시 화물이 운반을 시작하는 지점에서의 영수증 가격 또는 비무역상품의 운반 시작 지점에서의 실제가치 및 운반비와 보험료의 총합이다.

(三)운반비와 보험가치는 보험책임이 시작될 시 운송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운임총액과 보험료의 총합이다.

(四)기타 보험목적의 보험가치는 보험책임이 시작될 시 보험목적의 실제가치와 보험료의 총합이다.

제220조 보험금액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약정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무효하다.

제2절 계약의 성립·해제·양도

제221조 피보험인이 보험청약을 제기하고 보험인의 보증에 동의하며 해상보험계약의 조항에 대해 협의에 달성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보험인은

마땅히 즉시 피보험인의 보험증서 또는 보험서류에 서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서류 중 하나에 당사자 쌍방이 약정한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222조 계약의 성립 전에 피보험인은 마땅히 통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일상 업무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보험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보험비율의 확정 또는 보험인수에 대한 동의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상황을 진실되게 보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보험인이 알고 있거나 또는 통상적인 업무 중 마땅히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보험인의 질문이 없는 경우, 피보험은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제223조 피보험인의 고의로 인하여 이 법 제2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상황을 진실되게 보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계약해제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을 조성한 경우, 보험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인의 고의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이 법 제2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정황을 진실되게 보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응하는 보험료의 증가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해제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손실을 조성한 것에 대하여 보험인은 반드

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고지한 중요한 상황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4조 계약을 체결할 시, 피보험인이 보험목적이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실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또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 보험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보험료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보험인이 보험목적이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실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 피보험인은 이미 지불한 보험료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225조 피보험인이 동일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사고에 고나하여 몇 개의 보험인에게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동 보험목적의 보험금액의 총합이 보험목적의 가치를 초과한 경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인은 어떠한 보험인에게도 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피보험인이 획득한 배상금액의 총합이 보험목적의 손실 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보험자는 보험을 가입한 보험금액과 보험금액의 총합의 비례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어떠한 하나의보험인이 지급한 배상금액이 그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하는 배상책임을 초과한 경우, 마땅히 부담하여야 하는 배상책임에 따르지 아니하고 배상금액을 지급한 보험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26조 보험책임이 시작되기 전 피보험인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보험인에게 수속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인은 마땅히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7조 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책임이 시작된 후 피보험인과 보험인은 모두 계약을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의 약정에 의거하여 보험책임이 시작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보험인은 보험책임이 시작된 날로부터 보험해제일까지 보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잔여 부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인이 보험계약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약을 해제한 날로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보험료를 피보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28조 비록 이 법 제227조의 규정이 있으나, 화물운수와 선박의 항해용선보험은 보험책임이 시작된 후 피보험인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9조 해상화물운수보험계약은 피보험인의 배서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의 권리·의무 역시 그에 따라 이전된다. 계약의 양도 시 미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인과 계약수양인은 연대지급책임을 부담한다.

제230조 선박양도로 인하여 선박보험계약을 양도한 경우, 마땅히 보험인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보험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선박보험

계약은 선박양도 시점부터 해제된다. 선박양도가 항해 중에 발생한 경우, 산벅보험계약은 항해 종료 시 해제된다.

계약이 해제된 후, 보험인은 마당히 계약해제일로부터 시작하여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보험금을 피보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1조 피보험인이 일정한 시간에 나누에 선적하거나 화물을 인수한 경우, 보험인과 예약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약보험계약은 마땅히 보험인이 서명발급한 예약보험증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32조 피보험인의 요구에 따라 보험인은 마땅히 예약보험에 의거하여 나누어 선적한 화물에 보험증빙을 각각 서명발급하여야 한다.

보험인이 각각 서명발급한 보험증빙의 내용과 예약보험증빙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각 서명발급한 보험증빙을 기준한다.

제233조 피보험인이 예약보험계약을 거친 화물이 이미 선적되었거나 도달한 정황을 알게 될 시, 마땅히 즉시 보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내용은 선적화물의 선박명·항선·화물가치·보험금액이다.

제3절 피보험인의 의무

제234조 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인은 마땅히 계약성립 후 즉시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보험인이 보험료를 지급하기 이전에 보험인은 보험증빙의 서명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235조 피보험인이 계약에서 약정한 보증조항을 위반하였을 시, 마땅히 즉

시 서면으로 보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인은 통지를 접수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보증조건, 보험료의 증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6조 일단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인은 마땅히 즉시 보험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방지하거나 감소하여야 한다. 피보험인이 보험인이 발송한 손실의 방지 또는 감소의 합리적인 조치에 관한 특별통지를 받은 경우, 마땅히 보험인이 통지한 요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피보험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조성한 손실의 확대에 대하여 보험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절 보험인의 책임

제237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조성된 후, 보험인은 마땅히 적시에 피보험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8조 보험인의 보험사고로 조성된 손실의 배상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치보다 적은 경우, 보험목적에 부분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을 시, 보험인은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비례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239조 보험목적이 보험기간에 몇 차례의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조성된 손실은 설령 손실금액의 총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

인은 마땅히 배상하여야 한다. 단, 부분적 손실이 발생한 후 복구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또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인은 전체 손실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0조 피보험인이 계약에 근거하여 배상을 획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고 감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과 보험사고의 성질·정도를 확정하기 위하여 지출한 검사·가겨극정의 합리적인 비용 및 보험인의 특별한 통지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마땅히 보험인이 보험목적의 손실배상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인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에 대한 지급은 보험금액의 액수를 한도로 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치보다 적은 경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인은 마땅히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비례에 따라 이 조가 규정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1조 보험금액이 공동해손분담가치보다 적은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액과 분담가액의 비례에 따라 공동해손분담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42조 피보험인이 고의로 인하여 조성된 손실에 대해 보험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43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원인 중 하나로 화물의 손실이 조성된 경우, 보험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

니한다.

(一)항해연기・교부연기・시세변화

(二)화물의 자연적 마모, 자체의 결함과 자연적 특성

(三)포장불량

제244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원인 중 하나로 인하여 보험선박손실이 조성된 경우, 보험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一)선박의 출항 시 항해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단, 선박정기보험 중 피보험인이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二)선박의 자연적 마모 또는 부식

운임보험은 이 조의 규정을 비교 대조한다.

제5절 보험목적의 손실과 위부

제245조 보험목적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멸실되거나, 심각한 손괴로 인하여 완전히 원래의 형체・효능을 상실하거나, 더 이상 피보험인의 소유로 귀속될 수 없는 경우가 현실전손[1]이다.

제246조 선박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현실전손이 이미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현실전손의 회피를 위하여 지급이 필요한 비용이 보험가치

[1]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ATL): 물품이 파손되어 상품 가치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멸실되거나 물품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상품 본래의 성질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되거나,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그 소식을 알 수 없는 경우.

를 초과하는 경우가 추정전손[2]이다.

화물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현실전손이 이미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현실전손의 회피를 위하여 지급이 필요한 비용과 계속적으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비용의 총계가 보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추정전손이다.

제247조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에 속하지 아니하는 손실은 부분손실이다.

제248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최후의 소식을 획득한 지점에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아니한 기간이 만2개월이 넘은 후에도 여전히 그 소식을 알 수 없는 경우, 선박실종이다.

선박실종은 현실전손으로 간주한다.

제249조 보험목적에 추정전손이 발생하여 피보험인이 보험인에게 전체손실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마땅히 보험인에게 보험목적을 위부하여야 한다. 보험인은 위부를 수용할 수 있으며, 또한 위부를 수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단, 마땅히 합리적인 시간 내에 위부의 접수 여부결정을 피보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부는 어떠한 조건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위부는 일단 보험인이

---

[2]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CTL) :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았으나 그 손해정도가 심각하여 종래 그 목적물이 가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와 그 수선 및 수리비가 수선 후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큰 경우. 즉, 위부(Abandonment)가 인정되는 경우.

수용하면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0조 보험인이 위부를 접수한 경우, 피보험인은 위부재산의 전체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보험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6절 보험배상의 지급

제251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인이 피보험인에게 보험배상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인이 보험사고의 성질과 손실정도와 관련있는 증명과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2조 보험목적이 보험책임범위 내의 손실의 발생이 제삼자에 의해 초래된 경우, 피보험인은 제삼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보험인이 배상을 지급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상응하게 보험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피보험인은 마땅히 보험인에게 필요한 문건과 알아야하는 정황을 제공하여야 하며 최선을 다하여 보험인이 제삼자에게 구상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53조 피보험인이 보험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삼자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보험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인은 보험배상을 상응하게 감소할 수 있다.

제254조 보험인이 보험배상을 지급할 시 마땅히 지급하여야 하는 배상액 중 상응하게 피보험인이 이미 제삼자에게 취득한 배상을 감할 수 있다.

보험인이 제삼자에게 취득한 배상이 그가 지급한 보험배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마땅히 피보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55조 보험사고의 발생 후 보험인은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계약에 약정한 보험배상을 전액 지급하고 보험목적에 대한 의무를 포기할 권리가 있다.

보험인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행사는 마땅히 피보험인의 배상손실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보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인은 통지를 받기 전에 손실을 회피하거나 감소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은 여전히 마땅히 보험인이 상환하여야 한다.

제256조 이 법 제25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보험목적에 전손이 발생하면 보험인은 전체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 보험목적에 대한 전체 권리를 취득한다. 단, 보험의 전액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상황 하에서 보험인은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비례에 따라 보험목적의 부분적 권리를 취득한다.

제13장 시효

제257조 해상화물운수에 있어 운송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며, 운송인이 화물을 교부하거나 마땅히 교부하여야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시효기간 내 또는 시효기간의 만료 후에 책임

을 부담하여야 함이 인정되는 자는 제삼자에게 구상청구를 제기한 경우, 시효기간은 90일이며, 구상청구를 제기한 자가 원배상청구를 해결한 날로부터 또는 그 본인이 제기한 소송의 법원의 기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항해용선계약의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2년이며 권리침해를 알게 되거나 마땅히 알고 있어야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258조 해상여객운수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2년이며, 각각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一)여객의 인신상해와 관련된 청구권은 여객이 선박을 이탈하거나 마땅히 선박을 이탈하여야 하는 날짜부터 계산한다.

(二)여객사망과 관련된 청구권은 운송기간에 발생한 경우, 여객이 마땅히 선박을 이탈하여야 하는 날짜부터 계산한다. 운송기간 내의 상해로 인하여 여객이 선박을 이탈한 후 사망한 경우, 여객사망일로부터 계산하나 단, 이 기한은 선박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三)짐의 멸실 또는 손괴에 관한 청구권은 여객이 선박을 이탈하거나 마땅히 선박을 이탈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259조 용선계약과 관련된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2년이며 권리침해를 알게 되거나 마땅히 알게 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260조 해상예선계약의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며 권리침해를 알게 되

거나 마땅히 알게 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261조 선박충돌에 관한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2년이며 충돌사고의 발생일로부터 계산한다. 이 법 제16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구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며 당사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262조 해난구조에 관한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2년이며 구조작업의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제263조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며 계산을 종료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264조 해상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인에게 보험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2년이며 보험사고의 발생일로부터 계산한다.

제265조 선박의 유류오염손해발생에 관한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2년이며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단,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시효기간은 손해를 조성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6조 시효기간의 최후 6개월 이내에 불가항력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시효는 중지된다. 시효중지의 원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시효기간은 계속 계산한다.

제267조 시효는 청구인의 소송제기·중재제가 또는 피청구인의 의무이행의 동의로 인하여 중단된다. 단, 청구인이 기소 또는 중재를 철회하거

나 기소가 기각된 경우, 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선박압류를 신청한 경우, 시효는 선박압류를 신청한 날로부터 중단된다.

중단시점부터 시작하여 시효기간은 다시 계산된다.

제14장 해외관계의 법률적용

제268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이 이 법과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명을 보류한 조항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이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69조 계약당사자는 계약적용의 법률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당사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70조 선박소유권의 취득·양도·소멸은 선기국(船旗國)법률을 적용한다.

제271조 선박저당권은 선기국법률을 적용한다.

선박은 선박만을 임차하기 이전 또는 선박임차기간에 선박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원선박등기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72조 선박우선권은 안건을 수리한 법원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273조 선박충돌의 손해배상은 침권행위지 법률을 적용한다.

선박이 공해 상에서 충돌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안건을 수리한 법원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동일 국적의 선박은 충돌이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였는지를 막론하고 충돌한 선박 간의 손해배상은 선기국법률을 적용한다.

제274조 공동해손의 결산은 결산지법률을 적용한다.

제275조 해사배상책임제한은 안건을 수리한 법원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276조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법률 또는 국제관계를 적용함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장 부칙

제277조 이 법에서의 계산단위란, 국제화폐기금조직이 규정하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그 인민폐 액수는 법원판결일, 중재기구재결일 또는 당사자의 협의일에 국가외환주관기관이 규정하는 국제화폐기금조직의 특별인출권의 인민폐에 대한 환산방법에 따라 도출한 인민폐액수이다.

제278조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